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5. 10 선고 2022가단5301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진호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헌

담당변호사 제갈철, 한세민

변 론 종 결 2023. 4. 12.

판 결 선 고 2023. 5. 10.

주 문

-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21. 6. 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9,566,55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9,566,552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21. 6. 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1) 및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21. 6. 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7,7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이 법원 2020차전4041호)하였고, 이 법원은 2020. 8. 19. 'C은 원고에게 104,480,645원 및 그 중 5,700만 원에 대하여 2020.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즈음 확정되었다(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확정채권'이라 한다).

나. 망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아파트',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망 D은 2019. 10. 1.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E조합에 채권최고액 7억 2,800만 원, 채무자 F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 D은 2021. 6. 8. 사망하였다. 망 D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F, C, 피고, G이 있었는데(법정상속분 각 1/4), 2021. 7.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F과 G에 대하여는 각 지분 1/4, 피고에 대하여는 지분 2/4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라. F, 피고, G은 2021. 9.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1. 8. 4.자 매매를 원인으로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매매대금 2억 9,50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에 대해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자이다. 그런데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D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자신의 상속지분을 동생인 피고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는 이미 전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가액배상을,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해서는 원물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1) 피보전권리

원고가 C에 대해 이 사건 확정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의 사해성

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데에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9호증의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I은행, J은행, K은행

IBK 기업은행, L은행, M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도, N 등에 약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채무불이행명부에 등재되는 등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예금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은 없어 채무초과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주시청에 대한 과세정보회신에 의하면, C이 2018. 12. 31.을 기준으로 O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총수의 2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회사는 2019년경 이후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2018. 12. 3. 해산간주되는 등 사업중단상태인 것으로 보일뿐더러, 2018년경 이미 순자산 가치가 마이너스 12억 원(자본총계 5,000만 원)에 이르므로, C이 보유하고 있는 위 O 주식회사의 주식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국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4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등 참조),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형인 C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는데, C은 망 D이 돌아가시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지분의 이전을 통해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를 이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에 대하여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금융거래자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을 제1호증(각 차용증, 가지번호 포함)은 객관적인 증거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차용증에 기재된 거래관계가 사실이라면 피고로서는 C이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로 인해 반환될 목적물 중 ① 이 사건 아파트는 선의의 전득자에게 양도되었으므로, 거래관념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해서는 원물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취소의 범위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취소채권자는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취소에 따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40802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 내로 한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복수인 경우 사해행위 전부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면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의 목적물을 특정하여 그에 관한 처분행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 사건 확정채권인 141,173,028원2) (= 104,480,645원 + 5,700만 원에 대하여 2020. 8. 7.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4. 12.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6,692,38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그런데 이 사건 토지 등의 가액은 1,094,425,904원이고(공시지가, 을 제5호증), 위 가액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부터 설정되어 있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라고 볼 수 없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7억 2,800만 원을 빼면, 원상회복되는 C 지분의 가액은

91,606,476원 $\{=(1,094,425,904\text{원} - 7\text{억 } 2,800\text{만}) \times \text{C 상속지분 } 1/4\}$ 이 된다.

한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2억 9,500만 원이고, 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중 C의 상속지분인 1/4에

해당하는 금액은 7,375만 원 $(=2\text{억 } 9,500\text{만 원} \times 1/4)$ 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의

가액배상범위는 위 7,375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토지 등으로 인해 보전되는 가액을 제외한

피보전채권액인 49,566,552원 $(=\text{이 사건 확정채권 } 141,173,028\text{원} - \text{이 사건 토지 등의 } 1/4\text{지분}$

공동담보가액 91,606,476원)이 된다.

결국 이 사건 아파트 중 1/4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 49,566,55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소결

1)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 중 1/4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3) 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그리고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4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9,566,55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이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49,566,5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준

별지

부동산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강원도 원주시 P에 있는 Q아파트 R동

[도로명주소] 강원도 원주시 S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17층아파트

1층 605.052㎡(5세대)

2층 689.349㎡(6세대)

3층 689.349㎡(6세대)

4층 689.349㎡(6세대)

5층 689.349㎡(6세대)

6층 689.349㎡(6세대)

7층 689.349㎡(6세대)

8층 689.349㎡(6세대)

9층 689.349㎡(6세대)

10층 689.349㎡(6세대)

11층 689.349㎡(6세대)

12층 689.349㎡(6세대)

13층 689.349㎡(6세대)

14층 689.349㎡(6세대)

15층 689.349㎡(6세대)

16층 689.349㎡(6세대)

17층 689.349㎡(6세대)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T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면적 86.69㎡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강원도 원주시 P 대 48927.4㎡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48927.4분의 48.243

2. 강원도 원주시 U 대 1469㎡

3. 강원도 원주시 U 대 1469㎡ 지상 건물 V동

[도로명주소] 강원도 원주시 W

경량철골조(조립식)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자동차관련시설, 단독주택 69.12㎡

4. 강원도 원주시 U 대 1469㎡ 지상 건물 X동

[도로명주소] 강원도 원주시 W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260.58㎡

5. 강원도 원주시 Y 대 109㎡, 끝.

1) 원고는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 8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선해한다.

2)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3)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